

##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2017. 05. 01

제1조 (목적) 본 연구소는 간호이론개발과 간호교육방법, 간호중재효과 등 간호대상자들과 간호학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간호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간호중재연구 결과가 간호대상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간호학과 연계된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경동대학교내에 ‘간호과학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를 둔다.

제3조 (연구원)①이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 대학교의 간호학과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초빙된 전문가는 위촉 연구교수, 위촉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임용되고, 수행하는 연구과제 종료 시 임용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

제4조 (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간호학적 이론개발과 모델에 관한 연구
2. 간호학적 중재에 대한 연구
3. 간호교육에 관한 연구
4. 기타 간호에 관련된 사업 및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장 등)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중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제6조 (연구팀) 소장은 필요에 따라 연구팀을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지원팀) 이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은 연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연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위촉 연구 교수, 위촉 연구원, 연구보조원) ① 위촉 연구교수는 연구조교수, 연구부교수, 연구교수로 구분하되,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 수행의 전문가로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 수행의 전문가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위촉 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 수행을 보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연구보조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촉 연구교수, 위촉 연구원,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 (사무원) 이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장은 사무원을 임명,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장이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소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 사항)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2.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사업계획에 관한 계획과 결과
3. 연구소의 예산 심의와 결산
4. 연구사무의 평가 및 집행 예산의 조정
5.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교외 연구비 및 수탁 과제비
2. 창조금과 기타 보조금
3. 본 대학교의 연구 지원비 및 운영 지원비

제15조 (연구비 및 관리비) ①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예산, 결산) ① 이 연구소의 예산편성은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